

규제일몰 해제등을 위한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 제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를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”에 대한 일몰해제
(안 제14조제1호 삭제)
- “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”에 대한 일몰해제
(안 제14조제3호 삭제)
- “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”에 대한 일몰해제
(안 제14조제4호 삭제)
- “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”에 대한 일몰해제
(안 제14조제5호 삭제)

- “제10에 따른 휴업·폐업 등의 신고”에 대한 일몰해제
(안 제14조제6호 삭제)
- “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”에 대한 일몰해제(안 제14조제7호 삭제)
- “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·고지”에 대한 일몰해제(안 제14조제8호 삭제)
- “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”에 대한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, 제검토 기준일을 “2015년 1월 1일”에서 “2021년 1월 1일”로 변경(안 제14조제9호 변경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1 -

- 2 -

총리령 제 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규제의 제검토)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4조(규제의 제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3년---(--- 3년--- ----- ----- -----
1. 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4. 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5. 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6. 제10조에 따른 휴업·폐업 등의 신고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7. 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8. 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·고지: 2015년 1월 1일	<삭 제>
9.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: 2015년 1월 1일	9. ----- -----: 2021년 1월 1일

- 3 -

- 4 -